

# 공공건축의 법적 정의 검토 \*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 공공건축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정의의 대안

### 공공건축의 법적 정의 검토 필요성

공공건축은 2007년 「건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의 건축 정책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으며 건축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수립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에는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이 중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공공건축 효율화’와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건축 정책의 바탕 위에서 2014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축 설계비가 정부의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의무화하였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로도 시행되었다.

정부의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함께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소규모 공공건축과 대

\* 이 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이규철 외, 2016)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공공건축 관련 제도 및 주요 내용

| 구분              | 근거 법령 및 조례                                                       | 업무 내용                                                                                                                                      |
|-----------------|------------------------------------------------------------------|--------------------------------------------------------------------------------------------------------------------------------------------|
| 국가공공건축<br>지원센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br>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br>자문에 대한 응답<br>공공기관 관계자 교육<br>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서울시<br>총괄건축가 제도 | 「건축기본법」<br>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br>「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br>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조례 제36조 제3항)<br>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의<br>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응대<br>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br>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응대 |
| 서울시<br>공공건축가 제도 | 「건축기본법」<br>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br>「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br>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조례 제37조 제3항)<br>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br>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과 자문 응대<br>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br>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응대  |
| 부산시<br>공공건축가 제도 | 「건축기본법」<br>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공공 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부터<br>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자문하고 소규모 건축물에<br>대해서는 신진 건축가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                                                           |

규모 개발사업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신설하여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 또는 공공건축 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와 같이 공공건축을 지원하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건축의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추진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상현(2013)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관련하여 합의된 개념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의 구호를 외치기 전에 구체적 실천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정기용(2008)은 공공건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설계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좀 더 높은 보편성을 요구하며, 보편성이란 특정 개인의

취향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과 같이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원하는 가치,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건축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제도는 이렇게 합의된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현행 법령의 공공건축 정의

현재 공공건축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sup>\*)</sup>으로,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사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다. 공공건축의 주체로서 ‘공공기관’, 공공건축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공공건축의 대상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명시하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중 공공건축의 정의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공공건축의 주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건축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sup>\*)</sup> 민간의 시설을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의 성격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각 제1조.

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관련 제도의 초기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공공건축 정의에서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적 성격을 검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공건축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건축물의 공공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정의에서는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공공건축을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하거나 조성’한다는 행위는 공공건축의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공공건축을 만든 이후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른 행위의 공공건축을 배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공공건축은 건축물을 만드는 특정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특정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의 성격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건축의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건축서비스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규정한 것을 따른 것이고, 이는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과 건축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건축행위의 대상 또는 범위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확대하여 정의한 것을 따랐는데, 과연 공공건축의 대상을 공공공간과 경관까지 포괄하는 공간환경의 범위까지 정의할 수 있는지, 혹은 건축물 이외의 공공공간까지 확대하여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공공건축 정의의 문제점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정의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공공기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4장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이라는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는 규정과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

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을 발주하거나 유지·관리하면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질적 수준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것이 공공건축의 정의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규정된 이유이다.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한 공공건축의 지향점은 ‘공공적 가치와 질적 수준 향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분명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이 용이한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행 공공건축의 정의는 법적 규정과 지향하는 목적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공공건축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중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시설들이 공공건축에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을 위한 관사·연수원 등 공공기관의 사적 시설, 골프장·휴양소 등 공공기관 소유의 위락시설, 교통·통신·설비·보안 등과 관련된 국가의 특수 목적 시설 등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부속시설로서 넓은 범위의 공적 시설이지만, 일반 대중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불필요한 검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예외 지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에 의한 여러 규정에서도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시설들이 공공건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거나 관련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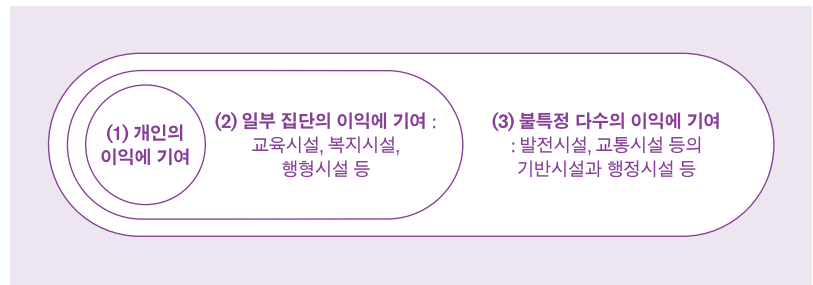
한편 사립의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사립의 미술관·도서관·박물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들은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공공건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못지않게 공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공건축으로서 관리되지 못하고 민간의 노력과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효과적인 공공건축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을 재정의해야 한다.

### 공공적 가치 : 공익성의 수준

공익은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는 대표적 개념으로, 국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공익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공익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최고선’으로서의 공익에서부터 합리적인 사회적인 논의의 과정에 의미를 두는 공익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 개념의 여러 수준을 공공건축에 대입시켜 보면, 공공건축의 혜택 또는 공공건축을 통한 이익이 지향하는 대상과 그 범위로 치환해 볼 수 있다. 국가 또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건축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건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건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발전시설, 교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시설 등이다.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건축은 지역·나이·계층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서, 주민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요양시설·행형시설 등이 해당된다.

### 공공적 가치 : 공익성의 수준



\* 이 글에서는 공공건축 정의의 기준을 공공적 가치와 공공건축의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공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수준과 접근성의 수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공공건축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검토하였다. 향후 이 글에서 제시한 기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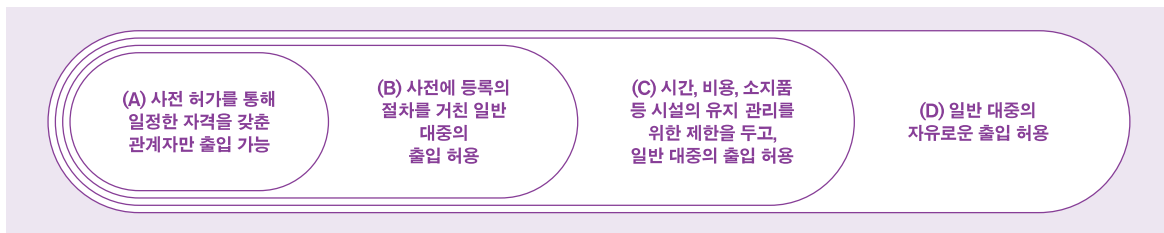
\*\* 이계만·안병철(2011),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의 관련 법률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15(2), p.2.

\*\*\* 김항규(2006),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헌법상의 공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v.20(1), pp.138~140.

### 공공적 가치 : 접근성의 수준

접근성의 수준은 현재의 법적 규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공공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물리적으로 일반대중이 얼마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수준은 공공성의 실현을 가능하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 중 하나이다. 공공건축으로 제한하는 의도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한 생활공간, 경제활동의 공간환경, 문화공간을 위한 공공적 가치에 근거를 두는 방향으로 공공건축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건축의 대상이 되는 여러 시설은 보안의 수준과 사용의 목적 등 각기 다른 다양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한 수준의 접근성이 공공건축의 정의에 규정된다면, 「건축기본법」의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대중이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하는 시설은 학교와 같이 사전에 허가를 받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부터 공공도서관처럼 사전에 등록의 절차를 거친 일반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처럼 시간·비용·소지품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한을 두고 일반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 공공적 가치 : 접근성의 수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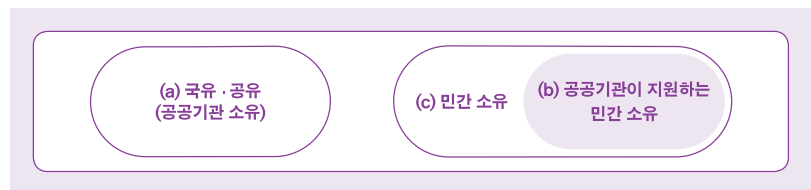
\*\* 「건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공공건축의 대상 :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소유와 운영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공공건축을 정의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공공건축의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공공건축의 목적과 「건축기본법」의 생활공간, 경제활동의 공간환경, 문화공간을 위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공건축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소 축소된 범위라고 생각된다.

공공성은 가변적이고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공건축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작업이다. 대신에 공공기관의 ‘소유’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시설을 공공기관이 승인하는 공공건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민간 소유의 사립 시설이지만 현행 제도에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박물관·도서관·공연장·극장·학교 등의 시설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함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각 시설의 운영 책임에 더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이라는 단일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을 부여할 필요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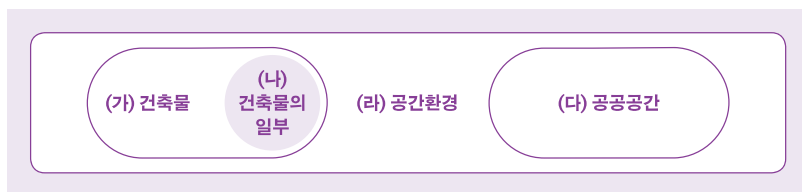
### 공공건축의 대상 :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



### 공공건축의 대상 : 공간적 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의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은 각각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

## 공공건축의 대상 : 공간적 범위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현재의 법적 정의에서 공공 건축은 공공공간과 경관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에 이르게 되지만, 물리적 실체로서의 대상물인 공공건축은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환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 등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공공공간을 공공건축에 포함할 것인지, 공공건축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외부공간은 공공건축과 병렬의 위계로서 공공공간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해서도 공공 건축의 범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에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주된 기능의 공간에 따라 공공건축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오피스 건축물의 1층과 같이 특정 공간이 공공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이를 공공건축 범위의 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건축이 다양한 기능과 성격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소유의 건축물 전체로 공공건축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간을 공공건축의 범위로 포함시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공건축 정의의 대안

공공건축 정의의 대안은 공공기관 소유 중심으로 한정한 기존의 정의를 확장하여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건축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공공적 가치는 매우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이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그 가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공공건축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법적 정의와 차이가 나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전문가와 일반 대중과의 논의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공건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확인한 공공건축 정의의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 정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이러한 범위는 공공건축의 대상을 확장하는 단계에 따라 공공건축을 여러 수준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공건축 정의의 범위

| 공공적 가치                                   |                                               | 공공건축의 대상                              |                                       |
|------------------------------------------|-----------------------------------------------|---------------------------------------|---------------------------------------|
| 공익성의 수준                                  | 접근성의 수준                                       |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 (2)~(3):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에 기여 | (B)~(D):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 | (a): 공공기관 소유<br>(b):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 | (가): 건축물<br>(나): 건축물의 일부<br>(다): 공공공간 |

공공건축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조합하여 공공건축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는 (a)공공기관 소유이고 (가)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a-가]로 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건축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소유자의 범위를 공공성 증진을 위해 (b)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로 확대하거나, 대상의 범위를 (나)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다)공공공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더라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의 범위가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 다른 관련 제도와 상충되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서, 공공기관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공공건축 정의에서 공익성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대상의 범위를 건축물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안 1 (최소한의 범위) :**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

최소한의 정의에서 공공건축의 범위를 확대하면, 공공기관 소유 외에 공익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중간 단계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안 2 (중간 범위) :**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공공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 \*\*

공공건축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두 번째 대안에서 공간적 범위에 건축물의 일부와 공공공간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안 3 (최대 범위) :**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공공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 포함)과 공공공간

이러한 공공건축 정의의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소유 중심의 공공건축 정의에서 공공성 중심의 공공건축 정의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의 공공건축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는 해당 공공건축의 관리기관에서 시설의 운영을 위해 규정한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이다.

\*\*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지원"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이상현(2013),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효형출판.
- 2 정기용(2008),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프로젝트」, 현실문화연구.
- 3 이계만·안병철(2011),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익 관련 법률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15(2), 한국정책학회.
- 4 김향규(2006),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헌법상의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v.20(1), 한국공공관리학회.